

단기수출보험(선적후) 개별보험 수출통지서

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

년 월 일

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일반수출거래 등) 및 단기수출보험(선적후-재판매) 약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출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보험 계약자	기업명 :	
	주 소 :	
	대표자 :	(인)
	담당자 직·성명 :	
	연락처 :	

증권번호	11 - -	Invoice 번호(상업송장번호)	
선 적 일 ¹⁾	년 월 일	수 출 금 액 ²⁾	
결제 조건	<input type="checkbox"/> L/C <input type="checkbox"/> D/P <input type="checkbox"/> D/A <input type="checkbox"/> CAD <input type="checkbox"/> COD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T/T, Personal Check 등)		
	<input type="checkbox"/> AT SIGHT <input type="checkbox"/> () Days On Arrival of Goods		
	<input type="checkbox"/> () Days After Sight <input type="checkbox"/> () Days After(From) Arrival		
	<input type="checkbox"/> () Days After(From) B/L Date <input type="checkbox"/> () Days After(From) Invoice Date		
	<input type="checkbox"/> () Days After(From) Nego Date <input type="checkbox"/> At 년 월 일		
	<input type="checkbox"/> () Days After Finding Doc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운송증권	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운송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상운송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HS CODE		중재 조항 유무 ³⁾	<input type="checkbox"/>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
대행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대행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지사 대행수출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·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 수출대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·전문무역상사 중견기업 수출대행		
요율특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수입자와의 무신용장거래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수입자와의 지급보증부 무신용장거래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조건부 Stand-By L/C 존재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소구조건 Forfaiting부 L/C거래 <input type="checkbox"/> Banker's Usance L/C 거래		
특기사항 ⁴⁾			

- 주) 1. 재판매 거래인 경우, 재판매처 앞 물품인도일(제3국 수출인 경우에는 선적일)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2. 수출금액 중 일부가 선수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, 수출금액이 인수한도 잔액을 초과하여 잔여한도 이내에서 일부만을 부보하는 경우 동 일부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3. 중소기업으로서 개별보험 무신용장거래에 대해 수출계약서상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인수한도 책정제한 등 수출보험이용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.
 4. 상사분쟁, 결제지연, 중국지역 수입대행 여부 등 수출보험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☞ 중국지역 무신용장 수출시 실수입자를 위주로 보험인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실수입자에 대한 인수한도를 책정 받아야 하며, 한도 신청이후에 실수입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본 수출통지서 까지 우리공사 앞 고지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중국지역 무신용장거래에서 귀사가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계약상대방 앞으로 수입대행 사실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앞 고지하여야 합니다. 실수입자의 존재사실에 대하여 부실고지가 있는 경우 약관에 의거 보험관계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.

☞ 본 수출통지서는 선적후 10영업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☞ 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지정 "수출유망중소기업", ② 혁신형 중소기업(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기업), ③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"환위험관리 우수기업", ④ KOTRA 지정 "글로벌브랜드사업 선정기업", 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"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", ⑥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"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", ⑦ 산업기술진흥원 선정 "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되어 있는 기업", ⑧ KOTRA가 확인한 "U턴 기업", ⑨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"대일수출유망기업", ⑩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"World Class 300 선정기업"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증빙서 제출 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.